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자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건본주택 관리는 별도의 운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절차에 준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 등 방문일정은 추후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홈페이지(<http://www.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com>)를 통해 공지 또는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정보 등 분양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051-755-1055)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4.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12.(금)	2024.04.22.(월)	2024.04.23.(화)	2024.04.24.(수)	2024.4.30.(화)	2024.05.03.(금)~ 2024.05.12.(일)	2024.05.13.(월)~ 2024.05.16.(목)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을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정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환경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4.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년 04월 22일(월)	2024년 04월 23일(화)	2024년 04월 24일(수)	2024년 04월 30일(화)	2024년 05월 03일(금) ~ 12(일)	2024년 05월 13일(월) ~ 05월 16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접수	계약체결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이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20839호(2024.04.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72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3~29층 11개동 총 1294세대

[특별공급 482세대(일반[기관추천] 85세대, 다자녀가구 131세대, 신혼부부 152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7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124	01	084.8897A	84A	84.8897	26.7250	111.6147	57.5462	169.1609	54.5763	386	39	39	70	11	35	194	192	5
		02	084.6046B	84B	84.6046	26.7952	111.3998	57.3529	168.7527	54.3930	165	16	17	30	5	15	83	82	4
		03	084.7705C	84C	84.7705	26.5496	111.3201	57.4654	168.7855	54.4996	273	27	27	50	8	24	136	137	2
		04	084.8897T	84AT	84.8897	26.7250	111.6147	57.5462	169.1609	54.5763	10	1	1	1	1	1	5	5	10
		05	084.6046T	84BT	84.6046	26.7952	111.3998	57.3529	168.7527	54.3930	2	1	0	0	0	0	1	1	2
		06	084.7705T	84CT	84.7705	26.5496	111.3201	57.4654	168.7855	54.4996	8	1	1	1	1	1	5	3	8
		07	106.7357	106	106.7357	27.1052	133.8409	72.3555	206.1964	68.6213	112	0	12	0	3	0	15	97	2
		08	106.7357T	106T	106.7357	27.1052	133.8409	72.3555	206.1964	68.6213	2	0	1	0	0	0	1	1	2
		09	112.9226A	112A	112.9226	27.8476	140.7702	76.5495	217.3197	72.5989	217	0	21	0	6	0	27	190	2
		10	112.8318B	112B	112.8318	29.1168	141.9486	72.5405	218.4366	72.5405	111	0	11	0	3	0	14	97	2
		11	112.9226T	112AT	112.9226	27.8476	140.7702	76.5495	217.3197	72.5989	6	0	1	0	0	0	1	5	6
		12	112.8318T	112BT	112.8318	29.1168	141.9486	76.4880	218.4366	72.5405	2	0	0	0	0	0	0	2	2
합 계											1294	85	131	152	38	76	482	812	47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이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 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 공용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공급대상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897A	084.6046B	084.7705C	084.8897T	084.6046T	084.7705T	106.7357	106.7357T	112.9226A	112.8318B	112.9226T	112.8318T
약식표기	84A	84B	84C	84AT	84BT	84CT	106	106T	112A	112B	112AT	112B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AT	84BT	84CT	106	106T	112A	112B	112AT	112BT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9	3	5	1	0	0	0	0	0	0	0	18
	장기복무 재대군인	1	1	1	0	0	0	0	0	0	0	0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0	4	7	0	0	0	0	0	0	0	0	21
	중소기업 근로자	10	4	7	0	0	1	0	0	0	0	0	22
	장애인	9	4	7	0	1	0	0	0	0	0	0	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9	17	27	1	0	1	12	1	21	11	1	0	131
신혼부부 특별공급	70	30	50	1	0	1	0	0	0	0	0	0	15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5	8	1	0	1	3	0	6	3	0	0	38
생애최초 특별공급	35	15	24	1	0	1	0	0	0	0	0	0	76
합 계	194	83	136	5	1	5	15	1	27	14	1	0	48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5%)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2차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중도금7차(자납)	입주 지정일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84A	386	1층	2	303,100,000	231,000,000	-	534,100,000	10,000,000	16,705,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26,705,000	160,230,000
		2층	15	309,300,000	236,000,000	-	545,300,000	10,000,000	17,265,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27,265,000	163,590,000
		3~4층	30	314,700,000	239,000,000	-	553,700,000	10,000,000	17,685,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27,685,000	166,110,000
		5~9층	75	317,300,000	242,000,000	-	559,300,000	10,000,000	17,965,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27,965,000	167,790,000
		10~14층	75	320,800,000	244,000,000	-	564,800,000	10,000,000	18,24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28,240,000	169,440,000
		15~19층	75	324,400,000	246,000,000	-	570,400,000	10,000,000	18,52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57,040,000	28,520,000	171,120,000
		20층 이상	114	328,800,000	250,000,000	-	578,800,000	10,000,000	18,94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28,940,000	173,640,000
84B	165	1층	3	297,600,000	226,000,000	-	523,600,000	10,000,000	16,18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26,180,000	157,080,000	
		2층	6	303,500,000	231,000,000	-	534,500,000	10,000,000	16,725,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26,725,000	160,350,000	
		3~4층	12	308,800,000	234,000,000	-	542,800,000	10,000,000	17,140,000	54,280,000	54,280,000	54,280,000	54,280,000	54,280,000	54,280,000	27,140,000	162,840,000	
		5~9층	30	311,200,000	237,000,000	-	548,200,000	10,000,000	17,41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27,410,000	164,46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5%)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2차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중도금7차 (자납)	입주 지정일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30일 이내	24.10.25.	25.03.25.	25.08.25.	26.01.25.	26.05.25.	26.09.25.	26.12.24.	
		10~14층	30	314,700,000	239,000,000	-	553,700,000	10,000,000	17,685,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27,685,000	166,110,000
		15~19층	30	317,200,000	242,000,000	-	559,200,000	10,000,000	17,960,000	55,920,000	55,920,000	55,920,000	55,920,000	55,920,000	55,920,000	27,960,000	167,760,000
		20층 이상	54	322,400,000	245,000,000	-	567,400,000	10,000,000	18,37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28,370,000	170,220,000
84C	273	1층	2	305,800,000	232,000,000	-	537,800,000	10,000,000	16,89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26,890,000	161,340,000
		2층	10	312,100,000	237,000,000	-	549,100,000	10,000,000	17,455,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27,455,000	164,730,000
		3~4층	20	316,500,000	241,000,000	-	557,500,000	10,000,000	17,875,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27,875,000	167,250,000
		5~9층	50	320,200,000	243,000,000	-	563,200,000	10,000,000	18,160,000	56,320,000	56,320,000	56,320,000	56,320,000	56,320,000	56,320,000	28,160,000	168,960,000
		10~14층	50	322,800,000	246,000,000	-	568,800,000	10,000,000	18,44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28,440,000	170,640,000
		15~19층	50	326,400,000	248,000,000	-	574,400,000	10,000,000	18,72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28,720,000	172,320,000
		20층 이상	91	330,900,000	252,000,000	-	582,900,000	10,000,000	19,145,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29,145,000	174,870,000
84AT	10	1층	10	312,100,000	237,000,000	-	549,100,000	10,000,000	17,455,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27,455,000	164,730,000	
84BT	2	1층	2	305,300,000	233,000,000	-	538,300,000	10,000,000	16,915,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26,915,000	161,490,000	
84CT	8	1층	8	313,900,000	239,000,000	-	552,900,000	10,000,000	17,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27,645,000	165,870,000	
106	112	1층	2	362,500,000	277,000,000	27,700,000	667,200,000	10,000,000	23,36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33,360,000	200,160,000
		2층	4	369,900,000	283,000,000	28,300,000	681,200,000	10,000,000	24,06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34,060,000	204,360,000
		3~4층	8	376,000,000	287,000,000	28,700,000	691,700,000	10,000,000	24,585,000	69,170,000	69,170,000	69,170,000	69,170,000	69,170,000	69,170,000	34,585,000	207,510,000
		5~9층	20	379,700,000	290,000,000	29,000,000	698,700,000	10,000,000	24,935,000	69,870,000	69,870,000	69,870,000	69,870,000	69,870,000	69,870,000	34,935,000	209,610,000
		10~14층	20	383,400,000	293,000,000	29,300,000	705,700,000	10,000,000	25,285,000	70,570,000	70,570,000	70,570,000	70,570,000	70,570,000	70,570,000	35,285,000	211,710,000
		15~19층	20	387,100,000	296,000,000	29,600,000	712,700,000	10,000,000	25,635,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71,270,000	35,635,000	213,810,000
		20층 이상	38	393,100,000	300,000,000	30,000,000	723,100,000	10,000,000	26,155,000	72,310,000	72,310,000	72,310,000	72,310,000	72,310,000	72,310,000	36,155,000	216,930,000
106T	2	1층	2	372,500,000	285,000,000	28,500,000	686,000,000	10,000,000	24,3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34,300,000	205,800,000	
112A	217	1층	2	391,400,000	299,000,000	29,900,000	720,300,000	10,000,000	26,015,000	72,030,000	72,030,000	72,030,000	72,030,000	72,030,000	72,030,000	36,015,000	216,090,000
		2층	8	399,900,000	305,000,000	30,500,000	735,400,000	10,000,000	26,77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36,770,000	220,620,000
		3~4층	16	405,700,000	310,000,000	31,000,000	746,700,000	10,000,000	27,335,000	74,670,000	74,670,000	74,670,000	74,670,000	74,670,000	74,670,000	37,335,000	224,010,000
		5~9층	40	409,900,000	313,000,000	31,300,000	754,200,000	10,000,000	27,71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37,710,000	226,260,000
		10~14층	40	414,200,000	316,000,000	31,600,000	761,800,000	10,000,000	28,09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38,090,000	228,540,000
		15~19층	40	418,400,000	319,000,000	31,900,000	769,300,000	10,000,000	28,465,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38,465,000	230,790,000
		20층 이상	71	424,200,000	324,000,000	32,400,000	780,600,000	10,000,000	29,03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39,030,000	234,180,000
112B	111	1층	2	382,100,000	292,000,000	29,200,000	703,300,000	10,000,000	25,165,000	70,330,000	70,330,000	70,330,000	70,330,000	70,330,000	70,330,000	35,165,000	210,990,000
		2층	4	390,200,000	298,000,000	29,800,000	718,000,000	10,000,000	25,9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35,900,000	215,400,000
		3~4층	8	395,800,000	303,000,000	30,300,000	729,100,000	10,000,000	26,455,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36,455,000	218,730,000
		5~9층	20	399,800,000	306,000,000	30,600,000	736,400,000	10,000,000	26,82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36,820,000	220,920,000
		10~14층	20	403,900,000	309,000,000	30,900,000	743,800,000	10,000,000	27,19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37,190,000	223,140,000
		15~19층	20	407,900,000	312,000,000	31,200,000	751,100,000	10,000,000	27,555,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37,555,000	225,330,000
		20층 이상	37	413,500,000	317,000,000	31,700,000	762,200,000	10,000,000	28,110,000	76,220,000	76,220,000	76,220,000	76,220,000	76,220,000	76,220,000	38,110,000	228,660,000
112AT	6	1층	6	401,800,000	308,000,000	30,800,000	740,600,000	10,000,000	27,03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37,030,000	222,180,000	
112BT	2	1층	2	393,000,000	300,000,000	30,000,000	723,000,000	10,000,000	26,15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36,150,000	216,900,000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건축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입니다.

■ 공급대상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 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 신용 보증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공급금액(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 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53 1143 573 1185">구분</th> <th data-bbox="573 1143 992 1185">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53 1185 573 1227">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data-bbox="573 1185 992 1227">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589 1227 976 1298">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 data-bbox="976 1227 2089 1298">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 data-bbox="589 1298 976 1345">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data-bbox="976 1298 2089 1345">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 무주택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

구분	내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우주택세대주 요건 																				
청약자격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3)</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세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부모 가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구분	내용			
배정항목	총배점	배정기준		비고
		기준	점수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5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내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구분	내용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p>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비고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년 04월 12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p>-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구분		내용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p>■ 자산기준</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p> <p>- 자산보유기준</p>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 colspan="5">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colspan="5">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 colspan="5">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 colspan="5">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259 633 2040 130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0%;">가점상한</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구분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구분	내용																																																														
	단계	소득구분	내용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비고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임양) 입주 시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임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 04월 12일</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년 04월 12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년 04월 12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구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 <td>130% 이하</td> <td>~9,105,862원</td> <td>~10,723,007원</td> <td>~11,407,592원</td> <td>~12,432,267원</td> <td>~13,456,941원</td> <td>~14,481,615원</td> </tr> <tr> <td>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 <td>130% 초과 160% 이하</td> <td>9,105,863원~ 11,207,214원</td> <td>10,723,008원~ 13,197,547원</td> <td>11,407,593원~ 14,040,114원</td> <td>12,432,268원~ 15,301,251원</td> <td>13,456,942원~ 16,562,389원</td> <td>14,481,616원~ 17,823,526원</td> </tr> <tr>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 <td>11,207,215원~</td> <td>13,197,548원~</td> <td>14,040,115원~</td> <td>15,301,252원~</td> <td>16,562,390원~</td> <td>17,823,527원~</td> </tr> <tr> <td>1인 가구</td> <td>160% 이하</td> <td>~11,207,214원</td> <td>~13,197,547원</td> <td>~14,040,114원</td> <td>~15,301,251원</td> <td>~16,562,389원</td> <td>~17,823,526원</td> </tr> <tr> <td></td> <td></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 <td>11,207,215원~</td> <td>13,197,548원~</td> <td>14,040,115원~</td> <td>15,301,252원~</td> <td>16,562,390원~</td> <td>17,823,527원~</td> </tr> </tbody> </table>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p>																																																															

구분	내용																					
	<p>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p>■ 자산기준</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p> <p>- 자산보유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64 451 421 498">구분</th> <th data-bbox="421 451 600 498">금액</th> <th colspan="2" data-bbox="600 451 2098 49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498 421 1110" rowspan="3">부동산 (건물+토지)</td> <td data-bbox="421 498 600 1110" rowspan="3">3억3,100만원 이하</td> <td data-bbox="600 498 712 733" rowspan="3">건축물</td> <td data-bbox="712 498 2098 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734 545 1975 718">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734 545 1227 592">건축물 종류</th> <th data-bbox="1227 545 2098 592">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34 592 833 671" rowspan="2">주택</td> <td data-bbox="833 592 1227 631">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data-bbox="1227 592 2098 631">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data-bbox="833 631 1227 671">단독주택</td> <td data-bbox="1227 631 2098 671">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data-bbox="734 671 1227 718">주택 외</td> <td data-bbox="1227 671 2098 718">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data-bbox="600 733 712 1110">토지</td> <td data-bbox="712 733 2098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734 545 1975 718">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734 545 1227 592">건축물 종류</th> <th data-bbox="1227 545 2098 592">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34 592 833 671" rowspan="2">주택</td> <td data-bbox="833 592 1227 631">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data-bbox="1227 592 2098 631">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data-bbox="833 631 1227 671">단독주택</td> <td data-bbox="1227 631 2098 671">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data-bbox="734 671 1227 718">주택 외</td> <td data-bbox="1227 671 2098 718">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734 545 1975 718">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734 545 1227 592">건축물 종류</th> <th data-bbox="1227 545 2098 592">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34 592 833 671" rowspan="2">주택</td> <td data-bbox="833 592 1227 631">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data-bbox="1227 592 2098 631">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data-bbox="833 631 1227 671">단독주택</td> <td data-bbox="1227 631 2098 671">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data-bbox="734 671 1227 718">주택 외</td> <td data-bbox="1227 671 2098 718">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V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분	내용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9 241 2018 459">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 선정방법</p>	<p>■ 당첨자 선정 순서</p> <p>-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p> <p>-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p>■ ②가점</p> <p>-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p> <table border="1" data-bbox="259 796 2047 973">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259 1033 2069 1464">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②부양가족수</td> <td>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구분	내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구분	내용	
	구분	내용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4.30.(화) ~ 2024.05.0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4.3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4.2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4.04.23(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04.24(수) 09:00~17:30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4.05.03.(금) ~ 2024.05.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추후 홈페이지 (http://www.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com)에 공지 (예비입주자 별도 통보)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동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에 비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②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⑥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⑦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⑪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⑫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만19세 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임신헌인서 불인정)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⑧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에 비치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 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⑥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⑩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⑪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⑫ 소유 부동산 자산 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⑬ 재산세 납부 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류 제출
		○	⑮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노부모 부양		○	①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표3> 참고)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⑥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⑧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신생아 우선 공급인 경우
		○	⑨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⑩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⑪ 소유 부동산 자산 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⑫ 재산세 납부 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류 제출
		○	⑭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④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대리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 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구분	소득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③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구분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② 세무서,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① 세무서, 해당 직장	
무직자(만19세 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건물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가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www.wetax.go.kr)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을 경우 전국 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통서류	○		①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③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⑥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전 서류포함)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⑪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⑫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	○		①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홍) 청약홍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③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홍) 청약홍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⑧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여 “상세”로 발급)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4.30.(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5.13.(월) ~ 2024.05.16.(목)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4.30.(화) ~ 2024.05.09.(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4.3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05.13.(월) ~ 2024.05.16.(목) / 10:00 ~ 16:00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③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④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에 비치
		○	⑤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⑥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증명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본주택 건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바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 + 프리미엄 등)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DGB대구은행	504-10-477182-2	코리아신탁(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당청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코리아신탁(주) 명의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청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1. 청약 관련 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및 계약자는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1) 부부가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2) 부부 외 세대원이 특별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1)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2)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 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일괄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벌칙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6천만원(비수도권 1억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 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2)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3)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6. 관리형 토지신탁

-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 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유림종합건설이 부담한다.
-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 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에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4)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 또는 시공사 (주)유림E&C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7)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유림종합건설과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주)유림E&C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며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자납 시 이자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사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계약시(20%)	입주지정일(80%)
84A, 84AT	35,000,000	7,000,000	28,000,000
84B, 84BT	30,000,000	6,000,000	24,000,000
84C, 84CT	35,000,000	7,000,000	28,000,000
106, 106T	40,000,000	8,000,000	32,000,000
112A, 112AT	45,000,000	9,000,000	36,000,000
112B, 112BT	40,000,000	8,000,000	32,0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DGB대구은행	504-10-477184-6	코리아신탁(주)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 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또는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주택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반드시 행위허가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 (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대신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세대, Type에 따라 위치가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풍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형	실내기 설치대수	설치장소	일반형(냉방 전용+일반판넬)			고급형(냉방+공기청정기능+프리미엄 판넬)			비고
				공급금액	계약시 (10%)	잔금 (90%)	공급금액	계약시 (10%)	잔금 (90%)	
84A, 84AT	선택 1	2개	거실+침실1	3,990,000	399,000	3,591,000	4,800,000	480,000	4,320,000	프리미엄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선택 2	3개	거실+주방+침실1	4,990,000	499,000	4,491,000	5,850,000	585,000	5,265,000	
	선택 3	5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800,000	680,000	6,120,000	8,300,000	830,000	7,470,000	
	선택 4	6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700,000	770,000	6,930,000	9,100,000	910,000	8,190,000	프리미엄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84B, 84BT	선택 1	2개	거실+침실1	4,150,000	415,000	3,735,000	4,750,000	475,000	4,275,000	프리미엄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선택 2	3개	거실+주방+침실1	4,850,000	485,000	4,365,000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 3	5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700,000	670,000	6,030,000	7,900,000	790,000	7,110,000	
	선택 4	6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650,000	765,000	6,885,000	9,100,000	910,000	8,190,000	프리미엄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84C,	선택 1	2개	거실+침실1	4,150,000	415,000	3,735,000	4,650,000	465,000	4,185,000	프리미엄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주택형	선택형	실내기 설치대수	설치장소	일반형(냉방 전용+일반판넬)			고급형(냉방+공기청정기능+프리미엄 판넬)			비고
				공급금액	계약시 (10%)	잔금 (90%)	공급금액	계약시 (10%)	잔금 (90%)	
84CT	선택 2	3개	거실+주방+침실1	4,900,000	490,000	4,410,000	5,700,000	570,000	5,130,000	
	선택 3	5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850,000	685,000	6,165,000	8,200,000	820,000	7,380,000	
	선택 4	6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900,000	790,000	7,110,000	9,500,000	950,000	8,550,000	프리미엄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106, 106T	선택 1	3개	거실+주방+침실1	5,300,000	530,000	4,770,000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 2	5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50,000	765,000	6,885,000	8,950,000	895,000	8,055,000	
	선택 3	6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600,000	860,000	7,740,000	10,100,000	1,010,000	9,090,000	
112A, 112AT	선택 1	3개	거실+주방+침실1	5,400,000	540,000	4,860,000	6,200,000	620,000	5,580,000	
	선택 2	5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110,000	9,200,000	920,000	8,280,000	
	선택 3	6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800,000	880,000	7,920,000	10,300,000	1,030,000	9,270,000	
112B, 112BT	선택 1	3개	거실+주방+침실1	5,350,000	535,000	4,815,000	6,150,000	615,000	5,535,000	
	선택 2	5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800,000	780,000	7,020,000	9,100,000	910,000	8,190,000	
	선택 3	7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베타룸	10,150,000	1,015,000	9,135,000	12,000,000	1,200,000	10,800,000	

※ 주택형 84A, 84AT, 84B, 84BT, 84C, 84CT 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패키지 옵션 선택시 시스템 에어컨 옵션 중 선택1, 선택4 선택이 불가합니다.

(선택1 불가사유 : 주방면적 확장으로 거실만 설치시 냉방효율 부족, 선택4 불가사유 : 알파룸 없음)

※ 일반형과 고급형의 선택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판넬(덮개)의 디자인이 상이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 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건본주택용 냉난방 실내기가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으며 제품의 디자인 및 규격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옵션 품목의 계약 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 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되는 경우에는 옵션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 매립배관 및 연결용 매립박스가 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냉매 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냉매 매립배관 등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제시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내 냉매 매립배관, 배관연결구 및 전기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스위치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주방 특화 패키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항목	위치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84A, 84AT	패키지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자 주방 싱크대(대형 사각 싱크볼)로 변경 + 아일랜드 테이블(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더블 스퀘어 렌지후드 주방 훅바(장식장) + A/L 슬라이딩 TWO 도어 설치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확장형 팬트리룸(기존 알파룸 조명기구는 변경하여 시공됨) 	11,000,000	1,100,000	9,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자형 주방과 알파룸, 팬트리장이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 (300×600)로 마감됩니다. 미선택 시, PET마감 여닫이 도어 상부장과 침니형 렌지후드가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일반 라운드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미선택 시, 아일랜드 테이블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 콘센트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미선택 시, 주방 천장은 평천장으로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아일랜드등과 식탁등은 옵션과 무관하게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수가 시공되며, 주방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인테리어	거실/주방/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세린 타일 마감(600×600) ※ 팬트리룸 및 주방 훅바(장식장) 바닥은 패키지 선택 후 포세린 타일 마감 선택 시 서비스로 포세린 타일 마감됩니다. 	1,100,000	110,000	9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 한 금액입니다.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 중문(ONE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거실	아트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트월 벽체 포세린 타일 마감(600×1200) 	400,000	40,000	3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선택 사항 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1,400,000	140,000	1,2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천장이 시공되며,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 상판 +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800,000	80,000	7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기본"┌"자형 주방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확장 선택 시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판넬 타입 조명형 시스템 선반 가구 + 유리 마감 가구 도어 	3,000,000	300,000	2,7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풀대형 시스템 선반 가구와 PET 마감 가구 도어가 설치됩니다.
		침실2 불박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 × 600, THREE 도어, 측면 거울 	1,000,000	100,000	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침실3 불박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0 × 600, FOUR 도어 	1,200,000	120,000	1,0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84B, 84BT	패키지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자 주방 싱크대(대형 사각 싱크볼)를 아일랜드 테이블 형태로 연장(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더블 스퀘어 렌지후드 주방 훅바(장식장) + 키큰장(오픈장)SET 거실 우물천장 확장 +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 아일랜드등 2EA + 식탁등 3EA 	11,000,000	1,100,000	9,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자형 주방과 알파룸, 팬트리장이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 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 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미선택 시, PET 마감 여닫이 도어 상부장과 침니형 렌지후드가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일반 라운드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미선택 시, 아일랜드 테이블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 콘센트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 천장이 시공되며, 거실 간접 		

주택형	항목	위치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주방 천장은 평천장으로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식탁등은 동일한 모델로 2EA가 시공되며, 주방 간접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인테리어	거실 / 주방 / 복도 / 주방 팬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세린 타일 마감(600×600) 	1,000,000	100,000	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 중문(ONE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거실	아트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트월 벽체 포세린 타일 마감(600×1200) 	400,000	40,000	3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1,600,000	160,000	1,4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천장이 시공되며,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통합 패키지 선택시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 상판 +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1,400,000	140,000	1,2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 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기본"ㄴ"자형 주방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통합 선택 시 선택 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판넬 타입 조명형 시스템 선반 가구 + 유리 마감 가구 도어 	3,000,000	300,000	2,7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폴대형 시스템 선반 가구와 PET 마감 가구 도어가 설치됩니다.
		침실2 불박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 × 600, THREE 도어, 측면 거울 	1,000,000	100,000	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침실3 불박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0 × 600, FOUR 도어 	1,200,000	120,000	1,0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84C, 84CT	패키지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ㄴ"자 주방 싱크대(대형 사각 싱크볼) + 아일랜드 테이블(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더블 스쿼어 렌지후드 주방 흡바(장식장) + A/L 슬라이딩 TWO 도어 설치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확장형 팬트리룸 ※ 기존 알파룸 조명기구는 변경하여 시공되며, 안방 드레스룸으로 통하는 문은 벽으로 시공됩니다. ※ 안방 드레스룸 맞은편 불박이장 가로 사이즈 확장 	12,000,000	1,200,000	10,8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ㄴ"자형 주방과 알파룸, 팬트리장이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미선택 시, PET마감 여닫이 도어 상부장과 침니형 렌지후드가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일반 라운드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미선택 시, 아일랜드 테이블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 콘센트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미선택 시, 주방 천장은 평천장으로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아일랜드등과 식탁등은 옵션과 무관하게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수가 시공되며, 주방간접조명은 미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안방 드레스룸 맞은편 불박이장 사이즈는 700X500으로 시공됩니다. 	
	인테리어	거실/주방/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세린 타일 마감(600×600) ※ 팬트리룸 및 주방흡바(장식장)바닥은 패키지 선택 후 	900,000	90,000	8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선택 시,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택형	항목	위치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포세린 타일 마감 선택 시 서비스로 포세린 타일 마감됩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	• 현관 중문(ONE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거실	아트월	• 아트월 벽체 포세린 타일 마감(600×1200)	400,000	40,000	360,000	•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	•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천장이 시공되며,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주방	• 주방 상판 +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기본"ㄷ"자형 주방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 + 알파룸 확장 선택 시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 벽판넬타입 조명형 시스템 선반가구 + 2슬라이딩 도어	4,000,000	400,000	3,600,000	• 미선택 시, 플대형 시스템 선반 가구와 PET 마감 가구 도어가 설치됩니다.
		침실2 불박이장		• 1300 × 600, THREE 도어, 측면 거울	1,000,000	100,000	90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침실3 불박이장		• 1600 × 600, FOUR 도어	1,200,000	120,000	1,08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106, 106T	패키지	프리미엄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 "ㄷ"자 주방 싱크대(대형 사각싱크볼) + 아일랜드 테이블(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디자인 변경) •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더블 스캐어 렌지후드 • 주방흡바(장식장) + 키큰장(오픈장) SET •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 매입등(10W)4EA 	11,000,000	1,100,000	9,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선택 시, "ㄷ"자형 주방과 알파룸, 팬트리룸이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및 아일랜드 테이블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미선택 시, PET 마감 여닫이도어 상부장과 침니형 렌지후드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일반라운드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아일랜드 테이블이 기본형(한쪽쪽 방향 수납형)이 시공되며, 슬라이딩 콘센트는 설치 되지 않습니다. • 미선택 시, 주방 천장은 평천장으로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식탁등은 기본등(6EA)이 시공되며, 주방 간접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인테리어	거실 / 주방 / 복도 / 복도 팬트리룸	• 포세린 타일 마감(600×600)	1,300,000	130,000	1,1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선택 시,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	• 현관 중문(ONE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보조 현관	중문	• ONE 스윙 도어	1,700,000	170,000	1,530,000	• 미선택 시, 복도로 시공됩니다. ※ 두 옵션 중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납강화	• 주방쪽 출입 복도를 현관 팬트리장과 연결하여 팬트리장 확장 시공	600,000	60,000	540,000	※ 패키지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중복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거실	아트월	• 아트월 벽체 포세린 타일 마감(600×1200)	600,000	60,000	5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택형	항목	위치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조명	•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1,600,000	160,000	1,440,000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천장이 시공되며,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주방	• 주방 상판, 주방 벽, 아일랜드 테이블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1,000,000	100,000	90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및 아일랜드 테이블 상판은 MMA급 인조 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기본 "—"자형 주방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패키지 프리미엄주방 선택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 벽판넬 타입 조명형 시스템 선반 가구 + A/L 3연동 슬라이딩 도어	4,800,000	480,000	4,320,000	• 미선택 시, 플대형 시스템 선반 가구와 목재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침실2 불박이장		• 1900 × 600, FOUR 도어, 측면 거울	1,200,000	120,000	1,08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침실3 불박이장		• 2900 × 600, SIX 도어	2,000,000	200,000	1,80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112A, 112AT	패키지 (I)	프리미엄 주방 / 팬트리 + 알파룸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 "—"자 주방 싱크대(대형 사각 싱크볼, 길이 확장) + 아일랜드 테이블(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디자인(2100×850) 변경) •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더블 스퀘어 렌지후드 • 주방 흡바(장식장) + 키큰장(오픈장)SET •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 매입등(10W) 4EA • 팬트리 + 알파룸 통합 컬러룸으로 변경(※ 기존 팬트리룸과 알파룸의 조명기구는 변경하여 시공됩니다.) • 컬러룸 내 벽판넬 타입 조명형 시스템 선반 가구 • 컬러룸 루버형 TWO 슬라이딩 도어, 중정 공간(THREE FIX 유리 마감) 	16,000,000	1,600,000
패키지 (II)	프리미엄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 "—"자 주방 싱크대(대형 사각 싱크볼, 길이 확장) + 아일랜드 테이블(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디자인(2100×850) 변경) •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더블 스퀘어 렌지후드 • 주방 흡바(장식장) + 키큰장(오픈장)SET •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 매입등(10W) 4EA 	12,000,000	1,200,000	10,8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선택 시, "—"자형 주방과 알파룸, 팬트리룸이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및 아일랜드 테이블 상판은 MMA급 인조 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미선택 시, PET 마감 여닫이도어 상부장과 침니형 렌지후드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일반 라운드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아일랜드 테이블이 기본형(2000×850, 한쪽 방향 수납형)이 시공되며, 슬라이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미선택 시, 주방 천장은 평천장으로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식탁등은 기본등(6EA)이 시공되며, 주방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 패키지(I) 프리미엄 주방 / 팬트리 + 알파룸 통합 선택 시 중복 선택 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주택형	항목	위치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인테리어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 마감(600×600) ※ 팬트리룸 바닥은 패키지(Ⅰ,Ⅱ)선택 후 포세린 타일 마감 선택 시 서비스로 포세린 타일 마감됩니다.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 ONE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보조 현관	중문	• ONE 스윙 도어	1,700,000	170,000	1,530,000	• 미선택 시, 복도로 시공됩니다. ※ 두옵션중한가지만선택할수있습니다.
		수납강화	• 주방쪽 출입 복도를 현관 팬트리장과 연결하여 팬트리 장 확장 시공	600,000	60,000	540,000	※ 패키지(Ⅰ) 프리미엄 주방 / 팬트리 + 알파룸 통합 선택 시 중복 선택 할 수 없는옵션입니다
	주방 중문		• TWO 슬라이딩 도어 / TWO FIX 루버유리 SET + 복도 벽체 타일 마감. 단, 복도 벽체 타일은 거실 아트 월 타일과 동일한 타일로 마감됩니다.	4,000,000	400,000	3,600,000	※ 패키지(Ⅰ) 프리미엄 주방 / 팬트리 + 알파룸 통합 선택 및 패키지(Ⅱ)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거실	아트월	• 아트월 벽체 포세린 타일 마감(600×1200)	600,000	60,000	540,000	•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	•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1,600,000	160,000	1,440,000	•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천장이 시공되며,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주방		• 주방 상판, 주방 벽, 아일랜드 테이블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1,000,000	100,000	90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및 아일랜드 테이블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기본 "ㄱ"자형 주방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패키지(Ⅰ) 프리미엄 주방 / 팬트리 + 알파룸 통합 선택 및 패키지(Ⅱ)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 벽판넬 타입 조명형 시스템 선반 가구 + A/L 슬라이딩 도어	5,000,000	500,000	4,500,000	• 미선택 시, 폴대형 시스템선반가구와 목재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침실2 불박이장		• 1900 × 600, FOUR 도어, 측면 거울	1,200,000	120,000	1,08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침실3 불박이장		• 2900 × 600, SIX 도어	2,000,000	200,000	1,80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112B, 112BT	패키지	프리미엄주방	• 고급형 유리플랩도어 상부장(내부/하부조명), • 하부 싱크대에 대형 사각 싱크볼과 슬라이딩 콘센트 설치 • 주방 상판, 아일랜드 상판 및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더블 스캐어 렌지후드 • 주방 흡바(장식장) + A/L 슬라이딩 TWO 도어 설치	10,000,000	1,000,000	9,000,000	• 미선택 시, "ㄴ"자형 상부장, "ㄷ"하부장이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미선택 시, PET 마감 여닫이도어 상부장과 침니형 렌지후드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일반 라운드 싱크볼이 설치되며, 슬라이딩 콘센트 도 미설치됩니다.
	인테리어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 마감(600×600)	1,100,000	110,000	990,000	• 미선택 시,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		• 현관 중문(ONE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주택형	항목	위치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거실	아트월	• 아트월 벽체 포세린 타일 마감(600×1200)		600,000	60,000	540,000	•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 선택 사항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	• 간접조명 + 매입등(20W) 6EA		1,600,000	160,000	1,440,000	• 미선택 시, 기본 거실등 + 우물천장이 시공되며, 간접 조명은 미시공됩니다.
	주방		• 주방 상판 +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 기본 "C"자형 주방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 벽판넬타일 조명형 시스템 선반 가구 + 유리 마감 가구 도어		4,000,000	400,000	3,600,000	• 미선택 시, 폴대형 시스템 선반 가구와 PET 마감 가구 도어가 설치됩니다.
	침실2 불박이장		• 1600 × 600, THREE 도어, 측면 거울		1,200,000	120,000	1,08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침실3 불박이장		• 3300 × 600, SEVEN 도어		2,000,000	200,000	1,80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3) 타입별 추가 선택 사항 품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항목	위치		설치품목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전타입	가전	거실 아트월	월패드		• 13인치 월패드	400,000	40,000	360,000	※ 미선택 시, 10.3인치 가로형 월패드가 시공됩니다.
		공용/부부 욕실	양변기 / 비데		•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공용욕실에는 [대림바스]투피스 양변기가 설치됩니다.
			환풍기		• [힘펠 휴젠뜨 3] 스마트 복합 환풍기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에는 [대림바스] 투피스 양변기와 비데가 설치됩니다.
		주방	식기 세척기	택1	•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세척기(12인용, 가구도어 마감)	1,100,000	110,000	99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은 여닫이도어와 내부선반으로 시공됩니다.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한 금액임.
					•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14인용)	1,650,000	165,000	1,485,000	
			인덕션	택1	• 블랙	1,070,000	107,000	963,000	※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그레이			1,380,000	138,000	1,242,000		
		냉장고 + 냉장고장	택1	•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 + 김치냉장고 3도어] + 키큰장		6,770,000	677,000	6,093,000	※ 미선택 시, 확장 기본형 냉장고장은 오픈형 냉장고장 2개소만 시공되며,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112B타입은 기본형 냉장고장에 2도어 키큰장이 포함됩니다.
				• [비스포크 1도어 냉동 + 냉장 + 김치] + 키큰장		6,500,000	650,000	5,850,000	
		드레스룸	에어드레서		• 84(전체 타입)/112B, 112BT		930,000	93,000	837,000
• 106,106T/112A, 112AT					990,000	99,000	891,000		

-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미선택시 확장 기본형 냉장고장은 오픈형 냉장고장 2개소만 제공,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음.
- ※ 주택형별, 선택형별 냉장고, 냉장고장 및 키큰장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 선택 품목 금액이 상이함.
- ※ 중복 선택은 불가함.

■ 추가 선택 품목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납부 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DGB대구은행	504-10-499240-1	코리아신탁(주)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구 등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유상옵션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 유의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은 '오션포레'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팻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일광초), 중학교(일광중)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 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 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Ⅶ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7(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층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 계획이 현재 변경 예정중에 있어 일부 시설이 추가되거나 레이아웃 조정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 진행중에 커뮤니티 및 각종 공용부위 계획이 구조, 성능, 사용성 개선,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은 2022년 05월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경과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분	내용
	<p>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절차상 각종 심의(신고 포함),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은 관련 인·허가(심의 포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분양 당시 최종 인·허가(사업시행인가) 도서 및 변경 예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분양 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사용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시 지적 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 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계획된 각종 기반시설(공원, 도로 및 옹벽 등)의 계획은 공사 진행 중 각종 인·허가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동선, 식재, 레벨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계획된 도로(비상차로, 단지내 도로 포함)는 인·허가청 협의 후 조정된 도로로서, 일부 도로의 경우 보행자(장애인)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 및 옹벽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기장대호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보행로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내외부 간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높이차가 있는 부위는 옹벽이나 휨스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항만,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뱃새유발시설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단지주변의 15M도로, 20M도로 등에 접한 보행자 도로는 단지내 도로가 아닌 공공보행 도로로써, 대지경계 내부에 위치하여 있더라도 외부인들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경계 내부에 위치한 부분의 유지관리 주체는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이며, 도로 및 기반시설의 조성계획,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 방음벽과 방음터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허가 관청과 협의 내용에 따라 소음저감 포장으로 방음터널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팬스 설치 및 구역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 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구역경계)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 및 옹벽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역경계)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현 및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전시된 마감자재는 확장 기본형과 옵션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추가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마감재 시공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의 바닥, 벽체, 천장과 접하는 부위의 마감은 바닥재, 벽지, 타일 등의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되어,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112B, 112BT 타입 거실장에는 집광채루버(블라인드)가 시공됩니다.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84C, 112A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 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 및 주변 현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되며, 커뮤니티 시설내에 구현된 집기류(가구류, 장비류, 소품류 등)는 운영주체에서 설치 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112A형 옵션형으로 전시, 설치된 중정(현관전실) 내부 바닥마감(조경), 팬던트 조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 바닥 마감은 타일로 시공되며 팬던트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현관 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 일반가구, 각종 창호, 마루판 등의 마감재는 주문제작(OEM) 생산제품으로 본시공 시 동급 수준의 제조사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발코니수전, 전동빨래건조대, 하향식피난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정경구, D/A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일부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외부 입면은 일부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식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단지 배치, 단지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 또는 진입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 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삿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동 옥상은 동별 위치에 따라 경관조명의 유무, 위치, 디자인 및 난간의 위치와 디자인이 다릅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정차 공간 인근에 드롭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주정차 공간의 경우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 영역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물놀이 테마놀이터,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수경시설 및 물놀이 테마놀이터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 시 아파트의 현장 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 테마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 계획, 포장재, 포장 패턴, 외부 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차량 출입구 중 일부 구간 포장에 불력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진입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 등은 현장 여건 및 최종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빛 공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실제 시공시 상품개선,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보행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 테마놀이터 포함),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깔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야간 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 축뢰, 항공장애등,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 및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 CG 등에 표현된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사 진행시 설치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설물 위치, 형태 및 수량 등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벽체는 본 시공시 조적, 건식, 콘크리트 벽체 등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이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이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월록,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차량출입구)측에 설치되는 차량 차단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포함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및 모형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4동, 106동, 110동 지붕층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일부 동 지하층에 이동통신 설비 및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방송통신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옥외에 설치되는 전력인입 패드스위치(한전공사분)는 조경부위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 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킹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준공후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가전 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지내 동파방지용 열선, 환기팬, 영구배수, 잡배수 펌핑용 배수의 공용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급배기 환기팬과 지하주차장 드라이에어리어(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전기실, 환풍,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그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공용부 전기에 이용될 예정이며, 상부층 인접 세대에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시공됨을 인지하고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은 태양광 패널로 인해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3층 101동,102동, 103동, 111동 인근 및 지하 1층 106동, 107동, 108동 인근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층 105동, 106동, 108동, 109동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3층 104동 인근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하수조, 지하2층 105, 106동 인근에 기계실, 펌프실, 우수저류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지하 2층에 우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102동, 103동 인근에 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101동, 102동, 103동, 109동, 110동, 111동 인근에 폰드 및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101동, 102동, 103동, 109동, 110동, 111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사파리월드 테마), 파고라, 야외테이블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구분	내용
	<p>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출입구 입구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주차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102동, 103동, 104동 인근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 주거동 103동, 104동 인근에 시니어라운지(경로당)가 있습니다.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녹지, 조경식재 및 시설물, 바닥 포장, 조경 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수경시설 및 물놀이 테마놀이터 등, 보도 및 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옹벽 및 레벨차로 인한 경사지 형성으로 인해 일부 인접 구간은 조경 활동 공간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 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공급안내문,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 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 구간 및 소방, 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생활폐기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차 이용은 불가합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신축 건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층 주출입구는 커뮤니티 아트리움 구조물과 시각적 간섭으로 가려지거나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간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 쌓기, 비탈면, 옹벽(보강도 옹벽 포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외부 레벨이 더 높은 경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에 인접하거나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 또는 세대는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출입구 측에 설치될 예정인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층별, 동별 여건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5동과 109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101동~103동 사이에는 야외폰드,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어린이집, 103동과 104동 사이에는 시니어라운지(경로당), 104동과 105동 사이, 111동과 101동 사이에는 드롭존, 106~108동 사이에는 사파리놀이터, 110동과 111동 사이에는 캐리비안베이 물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오니,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대시설에 따른 소음, 분진,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인근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 및 보일러 연도 배관 설치 등에 따라 해당 위치 창호의 크기가 일부 조정되거나 설치 위치가 상하,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시 일부 변경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나,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7m,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이며, 일부 지하 진입층의 경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 차량 동선의 차로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로 입·출차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차단기 설치여부,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 계획에 따라 입주인과 방문객(상가 방문객 포함) 차량 동선이 일부 간섭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 주차, 확장형 주차, 경차 주차, 전기차 충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 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라며, 실시공시 주차위치 및 차량 통로 폭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의 경우 레벨차로 인하여 각 주동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인·허가 도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 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 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1개소로 각각 램프 없이 지하 2층,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되며, 지하주차장 내 층간 이동 램프는 지하 3층 2개소, 지하 2층 3개소, 지하 1층 1개소 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 지하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or 코어별로 지하주차장에서 주거동까지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 인접한 주차구획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에 주거용 1,952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포함,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99대 포함), 비주거용 10대 총 1,96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약 1.51대 수준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 1~3층에 지하 1층과 지하 3층에 총 99개소(급속 9대, 완속 90대)가 예정입니다.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방서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단위 구획별 소방 등 각종 설비 설치여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RC,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주차장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기둥 및 벽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도서상에 표기된 단지 외부에 설치되는 공공주차장은 세대당 주차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와 무관한 시설이며, 향후 사업시행인가변경 등을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출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고,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추후 설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부출입구 좌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 조망권 · 소음진동 ·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아프리오움을 포함한 커뮤니티시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사용 편의성 및 관리자 동선,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옥상 출입 가능여부, 옥상조경 여부, 난간대 설치여부,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로 제공된 CG, 모형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 공간 또는 지붕, 지상 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자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 고객의 입주 관리 및 A/S 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 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구분	내용
	<p>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추후 설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어린이 집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내부의 일반 가구, 주방 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 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 입주 시 세대 내 추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 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 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m(우물천장 2.40m)로 시공되고, 일부 시공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불박이장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팬트리,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 마감, 가구, 가변 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 바름 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 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 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부 마감 디테일은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급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지하에 제연팬이 위치하고 있어, 소방 테스트시 소음, 진동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세대의 우·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도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스 세대는 테라스로 진입을 위해 거실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테라스 외곽에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의 난간이 설치됨. • 본 공동주택에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공용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공용설비 및 시설을 유지 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는 시행 및 시공사가 준공 시에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타일마감으로 제공되며, 관리상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 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 위치에 타일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 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 빨래 건조대는 세대 타입별 설치 위치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설치 불가 평면에는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 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이형 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 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 및 분함창이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유리 난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세대는 제외됩니다.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 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 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가스레인지 좌·우측 벽에 설치되어 가스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욕조, 샤워, 세탁, 손빨래, 발코니), 욕실 악세사리 높이 및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 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 처리 방법 특별강조 지시 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 기구, 조명기구, 세대 단자함, 환기 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 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 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 형태, 천장 및 커튼 박스, 창호, 가구 등) •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 소음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되므로 유지관리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및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단지내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나. 이동 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상층 : 101동, 102동, 104동, 106동, 110동 2. 지하 2층 : 현릉#2, 현릉#6, 현릉#10, 현릉#11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 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 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홍통, 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 구조상 배관 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 예정인 피난기구(하향식 피난구)는 세대 내부 각 실의 층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됩니다. 피난기구(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건축심의 진행시 설치 위치가 반영된 사항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기구(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같은 공간에 설치 예정인 전동 빨래 건조대와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및 설치 여부는 추후 소방서 협의 및 인·허가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 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 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건본주택 건립 세대의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장, 가구, 마감 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 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불가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 제공되는 타일과 상이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설치 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 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XII 기타 계약자 안내 사항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전염병 등)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주택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 지하 3층 주차장	2.3m ~ 2.7m	2.7m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등급)
내진등급 I	VII-0.207g

■ 부대복리 시설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 성능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1조제1항<개정 2021.6.37>

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2. 신 청 자: 코리아신빌딩
 3.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건축물 차단성능	★★★★
2. 용량건축물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환경영향평가 소음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외재면 녹지율 조성	★★★★
21. 자연친화적 녹지 조성	★★★★
22. 생태인양	★★
23. 생활서식공간(비오토) 조성	★★
24. 일대용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적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열재의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항부분	★
4. 수리용이성 광항부분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량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열재대리 시공적 약자배려	★
10. 공해공간의 시공적 약자배려	★
11. 향락시설 설치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내 별도 복도설	★
13. 통신네트워크 중립시스템	★
14. 방범안전 증진책	★

다.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재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화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에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도중사 불도 - 침도양(명암기 - 흙방기를 만 영) 최소화	-
4. 일조권 안정성지 대책이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화 기술의 적용	-
9.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측정·관리·사용 금지	★
10. 환경성능 제품(EPP)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재활용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210mm x 297mm(배치지 120g/㎡)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건축주 : 코리아신빌딩
 준공일 : 2027.01.30.(예정)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
 층수 : 지하3층, 지상29층
 연면적 : 240,146.7899㎡
 건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
 설계자 : 김정희 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 G-SEED-P-2024-0162-6
 인증기관 : (사)한국그린빌딩협회
 유효기간 : 2024.02.22. - 2025.02.22. (사)한국그린빌딩협회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7)
 [별표1]건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에너지 및 환경요역

에너지 효율	31%
에너지 및 환경요역	56%
재료 및 자재	77%
물순환관리	70%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67%
실내환경	62%

종합등급 ★★★★★

2024년 02월 22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이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인증번호 : 24-주-예-144-0024
 용공연도 : 20270130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층수 : 지하3층 / 지상29층
 연면적 : 240146.7899(㎡)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김정희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상계	61.7	에너지효율등급	1+	CO ₂ 배출	48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상계	61.7	에너지효율등급	1+	CO ₂ 배출	56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상계	61.7	에너지효율등급	1+	CO ₂ 배출	64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상계	61.7	에너지효율등급	1+	CO ₂ 배출	7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7.5	35.9	28.2	7.5
급탕	30.7	33.7	25.0	6.9
조명	13.5	11.3	31.2	5.3
합계	61.7	84.6	94.6	21.4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차액,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1조제1항<개정 2021.6.37>」 제11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협회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 장치	적용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일괄 소등 스위치	적용	절수 설비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구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	--------	----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회 사 명	(주)승우엔지니어링	(주)대명기술단	(주)진일기술단
감리금액	4,768,825,600	945,891,800	748,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내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1800 호	569,438,31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 및 시공사

구분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상 호	(주)유림종합건설	코리아신탱(주)	(주)유림 E&C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4, 7층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7층 70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7, 지하1층 101호 (전포동, 서면더블루에스 지하1층)
법인등록번호	180111-0648064	110111-2937831	180111-0635855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 051-755-1055)

특별공급 청약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 04.22.(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2024. 04.23.(화)
	2순위 청약	2024. 04.24.(수)
당첨자발표		2024. 04.30.(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4. 05.03.(금) ~ 2024. 05.12.(일)
정당계약		2024. 05.13.(월) ~ 2024. 05.16.(목)

총 1,294세대 (전용 84㎡ ~ 112㎡)	분양문의 ☎ 051-755-1055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